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바,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사업에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신설함

(1) 지급대상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인 사람으로 하고, (안 제3조제1항제5호)

(2) 수당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함(안 제3조제1항제5호)

나.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- (2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2019. 8. 16. ~ 9. 5.) 결과: 의견 없음
- (3) 비용추계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

가.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

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

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3조(지원사업) 서울특별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5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 수당 지급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가.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독립유공자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가구에 월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비용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비용은 2020년 3월부터 발생하고,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독립유공자 및 유족 중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가구는 약3,300명으로 추정(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등록자수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세출	독립유공생활수당	6,600	7,920	7,920	7,920	7,920	38,280

4. 자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국비		-	-	-	-	-	-
시비	지방세수입	6,600	7,920	7,920	7,920	7,920	38,280
	세외수입	-	-	-	-	-	-
	지방채 등	-	-	-	-	-	-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6,600	7,920	7,920	7,920	7,920	38,280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유지은 (☎ 2133-7333)

II. 비용추계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('19년 7월)에 따른 「독립유공생활 지원수당」 신설
- 지급대상 :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
 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市 거주 독립유공자 자녀 · 손자녀 3,300여명('19.3월 기준)

2. 세부추계내역

○ 총비용 ≙ 38,280,0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비용)_i

i = 비용추계 연차(2020년~2024년)

- 연간비용 ≙ 7,920,000천원

·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= 대상자 × 월 지원액 × 12개월

= 3,300명 × 200천원 × 12개월 = 7,920,000천원

※ '20년 ≙ 6,600,000천원 (3월부터 시행 예정)

= 3,300명 × 200천원 × 10개월 = 6,600,000천원